중국경찰의 수사제도

김 찬 원*

Ⅰ. 서 론

Ⅱ. 형사소송법상 중국경찰의 지위와 권한
1. 중국형사소송법의 특징
2. 중국경찰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와 권한

Ⅲ. 중국경찰의 형사수사절차
1. 형사수사의 의의와 목표
2. 수사기구와 조직
3. 형사수사의 단계
4. 수사의 수단과 방법
5. 수사감식과 과학수사
6. 형사수사절차의 특징과 요점

Ⅳ. 중국경찰의 예심수사절차
1. 예심제도의 연혁과 의의
2. 예심수사의 성격과 원칙
3. 예심기구조직과 예심인원
4. 예심수사절차
5. 예심과 간수업무의 조화
6. 예심수사의 특징과 요점

Ⅴ. 우리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과 결론
1. 우리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
2. 결 론

◎ 참 고 문 헌

* 경찰종합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요원(경위)

Ⅰ. 서 론

200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양국은 10년이란 기간에 걸쳐 많은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오늘에 이르렀고 특히 양국 경찰은 수교 후부터 정기적인 방문과 지방청간의 교류를 통해 활발한 공조 활동과 협력을 굳게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경찰의 교류와 협력에 비해 상대국의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찰이 서로 다른 자국의 실정과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국 경찰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부족한 점도 상호 이해부족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되는 분야에서부터 양국의 경찰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이 글을 쓰게되었음을 우선 밝혀둔다.

우리 경찰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형사소송과정)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계의 시정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많은 서구 선진국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를 예시하곤 했었다. 서로의 주장 속에는 자신의 입장에 맞는 국가의 체제만을 고집하다보니 양자의 주장은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주장에 전제가 되는 사실을 간과하곤 했다. 그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예시로 제시한 각 국가들의 검·경관계와 제도들은 그 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는 최적의 제도이고 그 실정에는 국민이라는 구성원적인 환경과 함께 오랜 역사적·사회적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역사적·사회적 전통과 문화는 현재의 시점에는 서구와 일본문명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10년이전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반만년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중국과의 교류와 문화적·사회적인 제도의 공통성을 유지시켜 왔었다. 즉, 물질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와 원칙은 서구의 과학적 방법이 우리에게 유용하였지만,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형사소송절차나 수사와 같은 제도의 바람직한 모델은 오랜 역사와 사회적·문화적 전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모델보다 우리와 오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우호적인 교류가 있어왔던 중국의 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경찰의 수사권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중국경찰의 수사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중국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지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중국경찰이 경찰단계에서 진행하는

수사활동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형사수사절차를, Ⅳ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인 예심수사절차[1]를 소개한다. Ⅴ장에서는 중국경찰의 수사권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교훈과 함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산동대학 법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인 '한·중양국 형사수사제도의 비교' 중에서 수사상 강제조치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소송 중 수사기능을 형사소송법학적인 측면보다 경찰조직의 합리적인 수사활동과 실제 수사활동의 진행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강제조치부분도 중요한 업무로 형사수사절차와 예심수사절차 중간에서 이루어지고 예심수사절차에서 심사하고 신청하므로 예심수사절차에서 간략히 소개만 하였다. 또한 중국경찰의 경찰실무전서라고 할 수 있는 '中國公安業務全書[2]'와 중국인민공안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예심학개론, 예심학上,下, 예심업무教程(각 지방의 경찰학교 교수요원의 예심업무강의안), 형사수사론 등의 교재도 이 글은 쓰는데 많은 참고로 하였다.

Ⅱ. 형사소송법상 중국경찰의 지위와 권한

1. 중국형사소송법의 특징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 하나는 형사소송절차의 분류에 있어서 수사기능의 위치와 정의이고, 다음은 소송주체의 분류와 엄격하게 분리된 사건관할, 검찰기관의 독립성과 강제조치 허가권, 기소독점주의의 배제, 변호인제도의 광범위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절차를 법원의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소기능, 변호기능, 심판기능의 3대기능보다는 실질적인 형사소송절차로서 수사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검찰의 공소기능이 약한 특징을 지닌다. 이는 중국의 형사소송원칙에 따른 결과로 중국의 형소법 제7조에는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 검찰기관과 공안기관(경찰)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지고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여 유효한 법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0) 중국경찰의 예심기능은 이후 소개가 되겠지만 '豫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 기능에서는 예심과 더불어 看守기능을 병행하여 대개 '예심간수기능'을 같은 기능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 '예심수사'라고 필자가 용어를 구별하였다.

0) 嚴勵등 2인이 편저한 책으로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1996년판을 기준으로 함(2002. 5. 현재까지는 개정판 발간되지 않았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에서도 수사를 공소제기 기능보다 중시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대다수 법학자들도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사기능을 공소전의 준비단계나 공소기능에 포함된 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고 독립된 장에서 독립된 형사소송기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넓게 본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적법절차준수와 당사자주의보다 중시하는 형사소송이념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사기능을 형사소송의 독자적인 기능과 절차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본 당연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상 소송주체의 분류 역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3]을 소송기능의 하나인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소송주체의 하나로 분류한다. 즉 소송주체를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공안기관 등과 검찰), 공소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과 자소사건[4]의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기능을 담당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주체로 분류된다.

소송주체의 분류상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이 배제되어 있으며 경찰의 지위와 권한에서 후술하겠지만, 기소편의주의 역시 많은 제한이 따른다. 다만,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검찰의 독립성이다. 검찰은 정부기구조직상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는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과 함께 독립된 최고인민검찰원 산하의 별도의 기구와 조직을 갖고 있으며 행정부 기능인 국무원[5]조직과는 구성과 권한이 독립되어 있다.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갖는 권한은 미약한 반면 강제조치에 대한 허가권과 소송절차를 감독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제조치(구속, 압수·수색 등)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검찰기관의 허가장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과

0) 중국의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공안기관(경찰)과 검찰, 국가안전기관(우리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국가안전보장기관), 군대내의 보위부문(軍수사당국), 감옥내 발생 범죄에 있어서 감옥등 5개부문으로 크게 나뉘고 이를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공안기관(경찰)'로 통칭하거나 '수사기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0)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소추할 수 있는데 이를 '自訴제도'라 한다. 自訴제도에서 自訴를 한 자를 自訴人이라 하고 소추된 자를 피자소인 또는 피고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소의 절차에 있어 自訴사건을 제기받은 법원은 사안이 합리적으로 소추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거쳐 공판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진정과 민원사건 절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自訴하는 예가 거의 없는 실정임.

0) 국무원(총리) 산하에도 사법부(우리나라의 법무부와 유사)가 있으나 사법부의 기능은 감옥의 관리와 교정행정, 형벌집행과 변호사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일 뿐이다.

정에 대한 법률집행[6]을 감독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제한은 중국경찰의 지위와 권한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관련된 제144조의 규정과 제145조[7]의 피해자의 직접기소권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직접 소추할 수 있도록 '自訴제도'를 두고 있어 형사소추의 권한을 검찰이라는 국가기관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관할을 법규정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우선, 형소법 제3조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 체포, 구속집행, 예심은 경찰이 담당한다. 검찰은 구속을 허가하고 검찰이 직접수리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한다. 심판은 법원이 담당한다. 기타....."라고 규정하여 각 기관별 기능을 구분하고 있고 사건 관할의 분류도 제18조[8]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검찰과 경찰의 사건 관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있어서 그 특징으로 아직 변호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 자격시험제도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변호인의 범위를 변호사만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유의 변호인으로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만 보장하고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이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임할 권한을 피의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소속직장과 단체, 친구등도 변호인이 될 수 있어 선임 가능한 변호인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한 특징도 있다.

2. 중국경찰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와 권한

이상에서 간략히 수사와 관련된 중국 형

0) 소송절차중에 발생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법률집행의 감독을 말한다.

0)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하게되면 피해자는 상급검찰기관에 제소하여 기소를 청구할 수 있고 불기소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재심을 경유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사건자료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145조).

0) 중국 형소법의 규정을 보면,
제18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경찰)이 진행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독직횡령뇌물범죄, 국가공무원의 독직죄,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이용 불법구금, 고문자백강요죄, 보복모함죄, 불법수사로 국민의 신체권리침해죄 및 민주권리침해죄에 대하여는 검찰기관이 입건하고 수사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한 기타 중대한 범죄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리가 필요한 경우 省급 이상의 검찰기관의 결정을 거쳐 검찰이 입건 수사할 수 있다.

사소송법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찰기관은 비교적 그 권한과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실제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국가적 특징을 반영하듯 중국경찰이 상대적으로 수사절차상에는 지위가 높고 권한도 많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송주체로서의 지위

중국경찰은 법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소송주체로서 법이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배타적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수사의 종결까지 모든 수사권한을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는 형소법 제3조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동시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형소법상의 중국경찰의 지위는 중국경찰을 신뢰하는 국민과 정부의 태도와 함께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협력을 원칙으로 정해놓은 중국 형사소송법의 정신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

중국의 형소법 제18조[9]에서는 형사사건의 관할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배타적인 수사권을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수사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기관의 간섭과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건의 입건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다. 심지어 수사의 종결에 있어서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까지 결정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에 대하여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검찰의 기소심사단계에서 경찰의 의견과 다른 결정으로 불기소·기소한 경우에는 다른 결정을 하게된 이유를 의무적으로 경찰에 통보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경찰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10] 이런 점에서만 보더라도 중국경찰의 수사는 어떠한 기관의 간섭이나 통제, 지휘 등을 받지 않는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오히려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공소활동

0) 각주 8). 참조.

0) 중국 형소법 규정.

제144조 공안기관(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기관이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 마땅히 불기소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의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상급검찰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에 협력하고 불기소등의 불합리한 처리를 견제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⑶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조와 상호견제

중국의 경찰은 형사소송과정에서 검찰, 법원과 함께 정확하고 적시에 범죄사실을 밝히고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과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상호 협조하며, 객관적인 사실의 규명을 위해 상호 권한의 남용을 견제하여 유효적절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법규로 명시하고 있다(중국 형사소송법 제2조 및 제7조). 이처럼 경찰의 지위는 형사소송과정에 있어서 보조자나 부수적 기능의 수행자가 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실체적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실제 형사법정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의 근거와 증거의 원천이 경찰기관의 수사과정에 의존하고 있고, 검찰은 이러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유효적절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 역시 상하관계나 대립적인 차원보다는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동반 협력자로서의 협조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수사종결후의 기소 심사단계에 있어서는 상호 권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는지 견제하는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수사와 공소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화의 근간에는 앞서 언급한 형소법상의 엄격하고 명확한 사건 관할의 분배와 실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대부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상호 신뢰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⑷ 체포, 구속 등 강제조치 집행자

형소법상 중국의 경찰은 광범위한 강제조치권한과 함께 강제조치의 집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수사권이 경찰에 의해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조치의 집행권한이 없으며 교도소와 유치장 역시 검찰이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결정만 내리고 경찰에 통지한 뒤 실제 집행권한은 경찰이 가진다. 경찰은 집행후 집행상황을 검찰에 통지함으로써 강제조치의 집행은 종료된다. 구속의 경우, 경찰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허가를 검찰에 청구하고 검찰은 이를 허가·불허가로 나뉘어 통지한다. 검찰의 구속허가와 경찰의 구속허가청구 역시 견제와 협조의 논리에 따라 법적인 견제의 장치가 규정으로 명문화[11]되어 있다. 압수·수색·검

0) 중국 형소법 규정.

제70조 공안기관(경찰)은 검찰의 구속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증 등의 강제조치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경찰(검찰)의 동의와 허가절차를 거쳐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리한 사건이나 법에 규정된 검찰권한의 수사사건외의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강제조치 역시 형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중국경찰은 이러한 형소법상의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강제조치를 집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⑸ 수사종결권

중국경찰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갖는다. 수사의 종결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규정은 중국 형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규정의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종결에 대하여는 중국 형소법 제129조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의 확보가 충분하면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자료 및 증거 일체를 동급 검찰기관에 심사결정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0조에서는 “수사과정중 범죄혐의자에 형사책임이 없음을 발견시 사건은 마땅히 파기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즉각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속을 허가한 검찰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독자적인 사건 수사종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기관의 이에 대한 견제조치[12]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⑹ 중국경찰의 예심권

형소법 제90조에서는 형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범죄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집, 취조된 증거의 사실확인을 예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로 기소심사 이송전에 예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예심절차를 형사소송법상

단 피체포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만약,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 검찰기관에 대하여 재차 구속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급 검찰기관은 즉시 재심사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하급 검찰기관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0) 중국 형소법 규정.

제87조 검찰기관은 경찰의 입건수사대상 사건임에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경찰의 불입건에 대하여 검찰에 제소한 경우, 검찰기관은 경찰에 대하여 불입건 사유를 요구하여야 한다. 검찰기관은 경찰이 불입건한 이유가 부당할 경우 경찰에 통지하여야 하며, 경찰은 이 통지를 받은 후 입건 수사하여야 한다.

그 외 제88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自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제약과 견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심과 관련된 절차와 구체적인 규정은 형소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형소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와 증거에 관련된 규정 모두가 예심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권리를 가진 피의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통한 당사자 논쟁 속의 진실 규명보다 객관적으로 수사과정에 대한 재심사 또는 공판절차 이전의 심사절차(예심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 규명을 객관화, 합리화하려는 중국 특유의 법적 절차인 것이다.

(7) 기 타

중국경찰은 광범위한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어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중국경찰은 우리 경찰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과학·연구기능을 비롯해 소방기능, 호구관리기능(신분증의 제작·배포·관리), 출입국관리, 국경관리, 외국인관리와 여권(사적용도의 일반여권)·비자의 발급, 자동차등록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Ⅲ. 중국경찰의 형사수사절차

1. 형사수사의 의의와 목표

형사사건의 수사란 '경찰의 수사부문에서 관할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과 국가에 의해 주어진 수사권과 수사조치를 근거로 수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사건의 정황과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고 범인을 찾아내어 실증하는 경찰의 전문업무[13]'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형사사건이란 中國公安部의 部令 《關于刑事偵察部門分管的刑事案件及其立案標準和管理制度的規定(형사수사부문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입건표준 및 관리제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24종의 범죄[14]와 사안이 중대한 경범사안(치안관리조례 위반사범), 산림법에 의한 남벌과 도벌사범을 말한다. 형사사건의 범위에는 물론 중국 형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예비행위 중 형사책임을 소추할 만한 사안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목표는 크게 사건사실의 조사규명, 범인의 확정과 검거, 범죄조직의

0) 公安教材編審委員會<刑事案件偵察>編寫組 편저, <刑事案件偵察> 북경,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5. 7. p. 4. (중국인민공안대학 형사사건수사에 대한 교재에서 밝힌 형사사건 수사의 의의와 정의)

0) 경찰의 형사수사부문이 관할하는 사건 24종은 살인, 상해, 강도, 독극물투입, 방화, 폭발, 제방붕괴일수죄, 강간, 방랑, 절도, 사기, 갈취, 공갈, 화폐위조등죄, 유가증권위조등, 문서와 인장위조, 무고, 밀수, 인신매매, 마약제조운반등, 불법총포화약제조등, 가짜약품제조판매등죄, 생산활동파괴죄 등이다. 그 외에도 경범(치안관리조례위반사범)이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종(도박, 윤락행위, 사회질서혼란, 음란물제작밀수등)과 산림법에 의한 도벌과 남벌죄도 경찰의 사건범위에 든다. 前揭書(公安業務全書), p. 342.

파악과 조직 분산, 사건증거의 수집, 범죄 활동의 방지, 범인의 추적검거와 장물의 추적회수 등 6가지로 들고 있다.[15] 현실적인 수사활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사건사실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범인과 증거를 수집하고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 조직을 분쇄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수배와 공조수사를 통해 미검 범인과 장물을 추적 검거하여 밝히는 것이 형사수사단계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활동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군중으로부터의 신뢰, 정확하고 과감한 조치와 장악, 적극적인 수사, 적시의 사건해결 등이 있는데, 특히 주의할 만한 원칙으로 군중으로부터의 신뢰, 즉, 탐문과 제보체제 및 증거인의 조사 등 인적증거와 사회대중으로부터의 신뢰가 전체수사과정의 주요한 방침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다. 형사수사절차의 엄격한 법적 절차 준수와 '실사구시'의 실용주의정신 역시 현실적으로 형사수사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은 현실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 수사기구와 조직

중국경찰의 각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형사수사업무를 전담케 할 전문기구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중국경찰의 형사수사기구와 조직은 각 지방별로 특성에 따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수사정보조직, 사건수사기구, 통신지원체계, 현행범검거등 기동형사조직, 통제와 수배기구, 형사과학기술조직, 강력반, 외부공조와 기술적인 수사부문, 기초수사업무 조직으로 나뉘어 형사수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세분화하여 갖춘 조직은 대도시 경찰을 중심으로 나뉘었고 지방의 중소도시는 실정에 맞추어 2-3개 부문은 통합 운영하고 있다.

수사정보조직은 서무기능과 범죄첩보, 수사지도, 각종 수사자료 등을 관리하면서 부문별, 지역별 담당 기능에게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형사수사의 참모기능이고,

사건수사기구는 크고 작은 각종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하는 기구로 係(科라고 씀) 단위, 또는 기관[16]별로 處(우리의 課단위)

0) 前揭書(刑事案件偵察), pp. 5-7.

0) 경찰기관은 크게 직할시나 省의 公安局(직할시), 公安廳이 있고 중간단위의 州에서는 公安處가 총괄하고 있으며, 省 아래 省級(省내부의 주요 대도시)市에는 公安局이 있으며 지방소도시와 省級市의 區에는 公安分局가 설치되어 있음. 공안분국과 공안국 하부기관으로 派出所가 있으며 파출소도 규모와 단위가 지역에 따라 150여명 - 30여명 단위로 다양하다.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는 파출소외에 警站(경참 : 초소단위)를 두는 경우도 있다.

나 刑事警察隊(刑警隊), 支隊단위로 별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원이나 조직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통신지원체계는 公安部와 각 지방을 연결하고 기록, 통보하며 수배와 공조를 지휘조정하는 기능으로 광역단위의 조직적인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기동형사조직은 현행범을 주로 검거하는 부문으로 역, 터미널 등의 거점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현행범기동수사조직이고,

통제와 수배기구는 특정한 업무와 복잡한 지역을 장악하고 주요 도로 등을 통제하면서 수배와 형사범의 검거를 발견하고 수배배치, 검거하는 조직이다.

형사과학기술조직은 각 경찰기관별로 설치해놓은 법의학, 검증, 문서, 사진감정, 화학실험, 경찰견 관리 등의 감식과 과학수사 조직이고,

강력반은 特別刑事警察隊 또는 機動刑警隊로 불리우며 응급하게 처리해야할 사건과 특별히 중대한 사건과 테러성 사건의 수사만을 담당하고,

외부공조와 기술수사부문은 주요도시 이상의 기관에서만 설치된 기구로 하부 도시간의 공조와 특별히 중대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미제사건만 처리하고 주요 사건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부문을 담당하며,

기초수사업무는 기초수사자료를 수집하고 담당한다. 즉, 각종 범죄수사의 참고자료와 업무자료의 기초를 제공하고 사건별 문서관리, 조사 등록, 기술적인 예방업무와 자료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능별 조직과 기구는 위와 같이 실정에 맞추어 세분하고 있으며 수직적인 지휘와 조직기구체제는 公安部의 刑事偵察局(刑偵局), 직할시·省·自治區 公安廳(局)의 刑偵處, 시·區단위 公安局(分局)의 刑警處 또는 刑警隊(大隊, 支隊)로 편성되어 있다.

3. 형사수사의 단계

구체적으로 발생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입건('立案'이라 함), 사건의 분석, 초보수사, 심층수사(深入偵察), 수사완료('破案'이라 하며 수사의 완전한 종결은 아님)의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입건(立案)

형사수사부문이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건으로 등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입건(立案)이라고 정의하고 입건의 기준을 주관적인 범죄 혐의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형사책임을 소추할 필요가 있는 범죄사실이 있고, 둘째로는 형사사건 입건표준에 부합하며 형사수사부문의 관할범위 내에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건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입건하지만 중국경찰은 입건대상인 사건 중에서 전문적인 사건(專案)[17]은 별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입건과 사건 수사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기도 한다.

⑵ 사건의 분석(分析案情)

형사사건의 입건 이후, 수사인원[18]들은 이미 습득한 사실과 관련 자료들에 근거하여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다. 사건의 분석단계는 사건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로 수사업무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극소수 수사대상이 이미 밝혀진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대상인 피의자의 규명과 사건의 성격, 범행동기, 범인의 수와 특징, 범인의 범행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사건의 수단과 현장에 남겨진 흔적과 거기서 나타난 특징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수사의 진행과 계획도 이러한 사건의 분석이 우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능하다. 또한 사건의 분석과 이에 따른 사건의 수사계획 모두 수사인원과 수사대상인 피의자와의 역동적인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사건의 상황적 변화를 제대로 수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⑶ 초보수사(初步偵察)

사건의 분석을 통해 수사계획이 정해지면, 좀더 나은 수사경로를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사조치를 채택, 사용하여 적시에 수사를 진행시키는 초보수사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있는 물적, 인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경로 선택과 이를 통한 범죄사실의 규명, 증거의 획득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사경로의 선택에는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중심, 시간적, 장소적, 범행수단과 도구적인 방법, 목격자 진술을 통한 방법 등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경로에 맞추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사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조사방문, 과학적인 수사, 탐문, 물증의 감정과 화학적인 분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국경찰은 이러한 수사의 수단과 강제조치 등의 수

0) 반드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업무와 수사수단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사건이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중요사건의 예비음모사건으로 전문 수사반이 담당하여 수사하여야 할 전문사건을 말한다.

0) 중국의 형소법이나 경찰법에는 경찰관을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협의와 토의, 증거에 의해 수사하는 전통과 수사지휘권을 융통성있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가 필요 없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도 없다. 수사와 사법작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의 통칭이 '公安 또는 警察(2000.10.1.부터는 警察이란 용어를 단일표준어로 사용)'이고, 특히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을 통틀어서 '수사인원'이라고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방법에 있어서는 권한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보수사단계의 이러한 수사경로 선택과 수사수단과 방법의 합리적인 사용이 이루어진 후 범죄사실과 피의자, 충분한 증거의 확보가 된 상태라면 사건의 수사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보수사단계를 거친 후에도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사건수사의 중점이 되는 사실 파악에 더욱 더 완전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초보수사단계 중에 사건의 진상이 연결되지 않아 중점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좀더 심도있는 수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⑷ 심층수사(深入偵察)

심층수사는 중점이 되는 혐의 대상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사건수사의 혼란으로 해결방안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취하게 되는 단계이다. 간단한 사건이나 범죄사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사건파악을 더욱 굳히기 위해 취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방법을 원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건의 재분석과 수사방향의 수정이다. 수사과정에서 해결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사건의 분석이 잘못 이루어졌거나 이를 토대로 한 사건 수사방향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가상의 배제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상(假象)의 사실이 사실과 같이 수사과정에 간여된 경우 이를 배제하는 과정이다. 대개 이러한 假象은 범인들의 진술에서 비롯되거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그와 관련된 사실과 결합하여 사실적인 진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를 배제하는 절차가 두 번째 방법이다.

세 번째는 수사조치의 미흡한 점에 대한 검사방법이다. 수사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해진 각종 수사의 수단과 방법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또는 수사과정에서 취해지는 강제조치 등 수사조치의 과잉과 무리한 적용이 원인이 되어 사실이나 증거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검사하여 시정하는 조치이다. 이런 조치로써 정체되었던 사건 수사를 다시 진행시키고 증거와 사실의 검증을 보완하는 작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수사의 핵심혐의대상에 대한 집중파악이다. 핵심혐의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방법이다. 사건의 주위만 맴돌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 할 경우, 사

건수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사건의 중점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목격자의 탐문 등 제수사방법에서부터 새로이 접근하고 이에 따른 수사조치도 달리하여 수사의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⑸ 수사완료(破案)

수사완료로서의 '破案'[19]이란 수사의 순환과정으로의 귀속을 말한다. 법에 의해 범죄혐의인은 체포하거나 그 밖의 강제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의 전부를 진일보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수사완료(破案)단계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진행된다. 즉, 사건의 주요사실과 피의자가 이미 밝혀지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이러한 증거의 검증과 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사실상의 모든 형사활동 결과로 사건을 검증하고 전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해서 관련된 사건일체를 수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수사완료(破案) 단계라 하겠다. 수사완료단계는 조건에 부합되어도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찰수사기관은 사건이 마무리되어 밝혀졌다고 보도할 경우 '破案'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수사완료의 계획내용은 사건 내용의 실체와 결과, 수사완료(破案) 판단의 근거와 이유, 범인의 기본적인 파악과 강제조치 준비(검거상황), 압수·수색·검증의 준비와 장물과 범행도구의 확보, 수사완료를 위한 임무분담과 차량 등 물적인 준비 등이다. 이러한 치밀하고 철저한 수사완료(破案)과정을 거쳐야 사건의 마무리와 이송 등 다음의 소송단계[20]로 이어질 수 있다.

4. 수사의 수단과 방법

수사의 단계별 과정은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종류, 지역의 실정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고

0) 사실상의 형사수사활동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우리경찰의 최종 현장검증단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계획적인 사건실체의 재현과 강제조치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수집된 증거를 통한 증거조사로서 사건의 명확한 검증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0) 사건의 송치는 서류를 나누어 이송하게 되어 있다. 수사완료(破案)후, 사건의 수사서류와 소송서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소송서류로서의 사건관계 문서만 예심과정을 거쳐 검찰의 기소심사 단계로 이송되고 사건의 수사서류는 경찰기관에 남겨두고 있다. 수사완료 후에 혐의단계를 벗어난 피의자에 대하여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사건의 문서 등을 모두 폐기시키도록 되어 있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만 기록으로 수사참고자료 또는 수사교훈사례로 활용하고 있다.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선입견 때문에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실정에 맞는 지방경찰[21]의 특성을 우선 반영하고 사실에 근거하는 실용주의적 요소가 모든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형사수사의 절차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에 또는 단계를 바꾸어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취해지는 수사의 수단과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규에 명시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수사의 수단과 방법은 범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파악하고 범죄를 밝히고 검증하여 증명하며 제지·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처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단련되고 숙련된 결정체로서 규범화되어 있으며 논리학의 원리와 수사 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사의 수단과 방법은 크게 세분류, 즉, 일반적인 수사조치와 특수성 수사조치, 종합적인 수사조치로 나뉜다.

(1) 일반적인 수사조치

수사경찰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식적 수준의 보편화된 수사조치를 말하는데 경찰의 수사인원뿐만 아니라 타 기능의 경찰관들도 사용하는 조치들이다. 조사와 신문, 摸底排隊[22](모저배대 : 해당범죄와 관련있는 사실이나 사물, 사람을 발견·조사한 뒤, 이미 파악된 범행정황에 대조하고 확인, 여과하여 범죄혐의대상을 확정하는 조치), 범죄혐의자 신문, 추적과 범인차단, 현장장악, 혐의점 파악 등이 일반적인 수사조치의 내용들이다.

(2) 특수성 수사조치

형사수사부문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범인이나 중대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사조치로 사건의 내용을 밝히기 힘든 경우 법규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이 갖추어 질 경우 또는 수사상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행사할 수 있는 수사방법이다. 구체적인 수사방법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신문의 방

0) 중국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체제를 가장 잘 조화시킨 체제라 볼 수 있다. 국가적인 경찰의 체계, 즉, 공안부-공안청-공안국-공안분국-파출소 등의 체계를 유지하고 지휘 명령계통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반면, 인사와 예산등 실질적인 운용은 지방의 정부와 지방의 당조직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지방과 중앙의 명령과 지시가 충돌시 우선적으로 지방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中國公安業務全書> p. 4. 경찰업무의 지휘지도 체제 중에서.

0) 중국경찰의 수사부문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로 사건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분석하여 수사방침을 결정하는 우리의 수사계획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에 있어서 감시와 잠복의 기법, 도청과 제3자를 통한 위장 함정수사 방법이라고만 간략히 밝히고 있다.[23)]

⑶ 종합적인 수사조치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전면적이고 다각도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들을 말한다. 특히 집중적이고 여러 부문의 협력성 수사방법을 말하는데 중앙의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갖춘 기획수사, 강력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서 실시되는 집중수사방법, 관련사건과의 병합수사를 통한 일망타진 수사기법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규모가 전국적 성격을 갖는 중요범죄나 위법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대규모 수사계획 등에 사용되는 종합적인 수사수단이다. 여기에는 우선 자료의 수집과 대상의 분석, 파악, 전국적인 홍보와 사전 예고활동, 정부와 당의 선전을 통한 경고과정, 주민의 신고망에 대한 점검 등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5. 수사감식과 과학수사

중국경찰의 수사조직에 있어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가 과학수사와 감식기술 및 연구의 체계화와 실용화 체제다. 필자 역시 중국 공안부 제2연구소를 방문하여 내부의 체제와 연구활동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지만, 중국경찰의 과학수사와 연구는 공안부에서 과학기술부문을 局단위로 분류하고 중요한 연구는 직할 연구소를 두어 직접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건만을 감식, 연구하는 제2연구소는 중국인민공안대학 내에 위치하며, 의학, 화학, 물리학 등의 우수한 인력에 경찰의 신분을 주어 특채하여 운용되고 있고 지방마다 주요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공안국 단위에서는 수사를 뒷받침할 과학연구분야는 반드시 중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형사수사기술로서의 감정과 검증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법정의 유효한 증거로 채택됨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감정위탁도 처리하여 법적 제도적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과학수사의 연구는 흔적검사감정, 문서검사감정, 법의검사감정, 형사화학실험감정, 형사사진기술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⑴ 흔적검사감정

현장의 형상화된 흔적에 대하여 수집·탐색·확정·분석·감정하는 응용과학부문으

0) <中國公安業務全書> pp. 362-364, 제7편 형사수사업무 3절 형사수사조치와 수단 중에서.

로 주요 대상물은 손흔적(지문[24]포함), 족적, 공구흔적, 치아흔적, 창탄흔적, 차량흔적, 가축흔적과 분열-파괴흔적, 열쇠흔적, 유리와 섬유흔적 등 세분하여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⑵ 문서검사감정

문서감정은 민·형사상의 일정한 문서증거에 대하여 문서와 사건과의 관계, 문서와 당사자 또는 혐의자와의 관계를 확정하는 기술 검사와 사법감정수단을 말한다. 금석학이 일찍이 발달한 중국은 이 분야에서도 역시 세부적으로 필적부문, 인쇄도면분야, 기술된 언어분석, 오염된 기재 내용 분석, 문서재료 분석, 문서상에 나타난 인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오랜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형사수사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⑶ 법의검사감정

법의 감정은 의학, 생물학의 기술을 통해 인체의 상해와 사망, 신체유류물 등의 문제를 검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다. 법의학은 중국의 의학계에서는 8개의 전문과 중의 하나로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연구의 내용도 법의병리학, 법의독리학, 법의임상학, 법의인류학, 법의혈청학, 등으로 세분하여 연구되고 있다. 형사수사에 있어 법의검사감정의 대상은 주로 살인사건에서의 사망원인, 사망시간, 추정도구, 범행방법 등에 대한 검사감정, 시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검안과 부검,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적 증거에 대한 검사감정, 인적인 유류물 등의 분석과 검사감정(혈액, 타액, 정액, 배설물 등의 분석), 인체중독감정 등이 있다.

⑷ 형사화학실험감정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질의 화학적인 검사와 실험으로 감정하는 전문기술로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기술이다. 주요 감정기술 내용은 내용물 분석과 도구 분석, 폭약 성분분석, 독극물 분석 등이다.

⑸ 형사사진기술

일반적인 사진기를 통해 전문적으로 사건관련의 물체를 촬영하는 전문기술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진기술은 일반적인 사진 또는 예술사진, 광고사진과 달리 객관적이고 임의로 확대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하면서 사물이나 인체 등을 확인 감정하

0) 중국의 지문관리는 중요형사범과 강제조치(체포, 구속, 주거감시, 보석 등)가 취해진 피의자, 소년원 수용자와 노동교양소의 수용자, 현행범으로 검거후 석방된 자, 경범처벌법과 유사한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군중선동, 절도, 사기, 인장위조등 경범들에 대하여만 10指指紋과 單指指紋, 掌紋(손바닥 모양)등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는 수사기술수단이다.

6. 형사수사절차의 특징과 요점

중국 경찰의 형사수사절차상 특징은 광범위한 수사경찰의 권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과학적인 장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체제, 오랜 축적과 경험을 규범화시킨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다. 특히 획일화되지 않으면서도 경험과 과학적인 검증으로 뒷받침해주는 수사체제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수사인원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중복적인 검사와 수사완료단계의 실제적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건내용의 분석·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절차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이루어지는 형사수사절차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우선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수사서류의 작성과 검찰의 지휘, 사건의 등재와 영장주의 등 형식적으로 수사인원을 제약하는 요소와 타기관(검찰)의 지휘를 받는 불합리한 체제와 절차가 없으며, 수사역량에 대하여 과감하고도 광범위한 수사수단의 선택과 법과 제도를 통한 경찰수사절차의 신뢰, 실용주의적이면서 경험과 기술이 규범화된 수사방식,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연구분야의 활성화와 내실화[25] 등은 사건의 실체적 사실을 밝히고 범인과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형사사건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체제라 하겠다. 또한 위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법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법규로서 근거를 마련하는 권한 역시 중국 공안부는 法制局[26]을 두어 법과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27]

Ⅳ. 중국경찰의 예심수사절차

0) 물론 형사수사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과학과 연구분야가 발달되었고 이러한 과학연구의 발전이 계속해서 경찰의 형사수사체제를 신뢰하도록 하는 순환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과학수사와 연구분야에 지원하는 인력의 수준과 이를 통한 반복된 발전, 법원과 검찰 등의 공적인 신뢰 수준을 통해 판단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중앙의 공안부와 직속 연구소 일부에서만 있지 않고 지방에도 전파되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0) 형사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법규는 公安部의 단독 部令으로 제정하여 반포하지 않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같이 제정 반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입건(立案)의 표준과 관리에관한 법규 등은 공안부의 형사수사절차만을 언급하면서도 3개기관이 공동으로 제정 반포하는 등 공안부의 위상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전체 대표와도 같은 광범위하고 위력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0) 前揭 <中國公安業務全書> 중 제7편 형사수사업무 제9장은 형사수사와 관련된 법류를 총망라하여 형사수사법률법규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는 <中華人民共和國逮捕拘留條例>등 경찰의 형사수사와 관련된 법규와 법률해석 42편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경찰의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상 독자적인 지위를 뒷받침해주고 중국경찰의 수사권한에 있어서 사회적, 법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제도는 '예심수사'라는 중국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운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예심수사절차는 중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유지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사에 있어서 예심이란 절차가 형사소송절차의 어디에서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수사를 마친 뒤에 검찰의 기소결정을 거치기 전에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검찰의 당연한 권한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심이란 제도는 오래 전부터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왔던 제도라고 중국의 예심제도의 역사와 생성과정은 설명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물론 수사목적을 합리적으로 완성할 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편향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유지가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실적인 제도로서 중국의 예심수사절차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선택, 법률의 선택이란 차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1. 예심제도의 연혁과 의의

예심이란 '법정의 정식재판이전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예비적인 심리활동'을 말한다.[28] 즉, 수사기관의 예심기능에서 법에 의해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취해지는 신문과 조사활동 등 수사조치를 취하여 형사사건의 모든 사실과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여 기소단계로 이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사활동인 것이다. 예심기능이란 원래 경찰의 권한으로 있어 왔고 중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29]

예심제도는 원래 180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형사소송법전>에서 최초로 성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한 제도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법질서의 표현이라고 한다. 봉건사회에서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이며,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리가 인정되고, 규문식 수사관

0) 前揭書 <中國公安業務全書> p. 556, 예심업무편,
公安大學教材編審委 編著 <豫審業務教程>, 1994. 7.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p. 1.

0)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
제3조 형사사건의 수사, 체포, 구속집행, 豫審(예심)은 공안기관(경찰)이 담당한다.....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외 어느기관, 단체,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행에서 탄핵식, 소추식 절차로 형사소송제도가 변화하면서 탄생된 제도가 예심제도였다.[30] 중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심제도를 청나라 末期 서구의 형사소송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제정한 <大淸刑事訴訟律(草案)>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 (草案)은 공포되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민당의 중화민국 시기 <中華民國刑事訴訟法>(1928년) 에서 예심제도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었고, 1935년 국민당 정부는 이를 삭제하였고 이후 대만정부는 계속해서 예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동시에 공안기관(경찰)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공고히 하고 예심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예심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를 1954년 <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人民法院組織法>,<人民檢察院組織法>,<逮捕拘留條例(구속과 체포에 관한 조례)>등의 법규를 통해 경찰수사기관에 대하여 법적개념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능력 및 수사인력의 자질 향상과 정확한 법집행을 보장하며 법률과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해 예심업무를 전문화시키고 예심업무의 기구와 조직을 활성화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상 예심수사란 경찰이 형사수사과정을 통해 범죄와 싸우는 중요한 수단과 제도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는 크게 수사와 예심이란 두 단계로 나뉜다. 수사단계는 범죄를 발견하고 범죄의 실마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입건(立案)절차, 증거와 자료의 수집, 범인의 확정과 주요 범죄사실의 조사와 확인 또는 범죄혐의 근거의 확인과 중요 범인의 확보, 법에 의한 구속허가의 신청과 범인체포, 그리고 최종적인 수사완료(破案)까지의 단계를 통해 마무리한다. 예심수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구속과 체포의 단계에서 시작한다. 예심은 이후 신문과 조사, 사실의 대조확인, 수집증거의 보충, 사건의 全部 事實진상에 대한 규명, 법에 의한 유죄여부 판단, 해당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책임여부,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제출할지 또는 기소면제, 사건안됨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종결을 함으로 완성된다. 예심의 의의는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당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한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이 내리는 피의자에 대한 예비심사에 있고 이는 수사종결 後, 검찰의 기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의 과정 중에서 두 단계의 의의는 형사수사는 예심수사의 前提이고 예심수사는 형사수사의 연장과 발전단계, 수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사실확인이라고 볼 수

0) 公安敎材編審委員會<豫審學>編寫組 編著, <豫審學>上, 1994. 11.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pp. 22-23.

있다.

2. 예심수사의 성격과 원칙

중국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검찰이나 법원의 직접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 외의 대부분은 경찰의 수사와 예심절차, 검찰의 기소절차, 법원의 심판절차라는 세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예심절차가 형사소송절차 중에 기소와 심판과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예심수사는 경찰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최후에 거치는 과정으로 검찰의 기소, 법원의 심판절차의 전제와 기초가 된다. 경찰의 형사수사과정에서 수사완료(破案)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소추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심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예심을 통해 마지막으로 수사종결을 하게 되고 사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즉, 예심수사는 앞서 진행된 형사수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소와 심판단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검찰의 기소절차와 법원의 심판절차는 경찰의 예심절차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심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심판절차의 기초와 전제절차라고 말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소송주체로서 경찰의 권한과 역할 부분에서 설명하였지만 중국 형소법상의 경찰·검찰·법원은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상호 협조는 물론 상호 견제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의 표현으로서 예심수사는 경찰의 형사수사절차를 검증하는 의견과 심사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경찰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한 견제와 검증을 하며, 예심수사를 거치고 수사종결되어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재검증하고 심사하여 고유의 검찰권으로 기소·불기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견제와 협조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심판절차를 통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벌을 검찰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검증하는 절차로 재심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세 번의 검증을 거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세 기관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원칙을 완전히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예심수사는 이러한 세 기관의 형사소송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하는 전제와 기초로서의 연결기능과 최초의 수사 검증의 성격을 지닌다.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의 중요한 연결기능을 위해서 예심수사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검찰·법원의 기초와 전제가 되는 예심수사를 진행한다.

(1) 정확한 법집행과 엄격한 사건처리

경찰은 법집행의 최일선 기관으로 예심과정 역시 법에 의한 엄격한 제약과 감독을 받는다. 또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예심과정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위법과 범죄에 과감히 대처하여 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부단한 연구를 통해 예심의 질과 사건수사의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⑵ 사실상황을 근거하고 조사와 신문의 상호결합

사실은 판단하기 위해 예심과정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객관적, 전면적인 사건의 관찰과 前後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광범위한 조사와 사물의 대조·검증을 통해 진실상황과 是非·범죄성립여부 등을 분명히 가리고 사건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정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건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하여 주관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사건 파악과 訊問심사와 조사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착오와 모순점을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⑶ 大衆의 관점을 견지하고 大衆에의 신뢰·의지

경찰의 예심수사의 원칙으로 大衆에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들의 관점을 중시한다는 의미는 모든 형사사건의 발생에서부터 그 실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시민 대중의 협력과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진술, 증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내세워진 원칙이다. 이 원칙은 중국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도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점에서 그 제보와 진술, 그들 속에서 밝혀진 증거들만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대중에 의지하거나 이들과 무관하게 예심수사를 하는 경찰의 주관적인 의견만을 중시하고 사실의 규명하는 첫 시점도 경찰의 추리에 대한 검증이라면 아무리 수사와 예심을 완벽히 하여도 증거에 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반증을 의미하는 원칙이라 하겠다. 나아가 형사소송의 목적은 물론 예심수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의 퇴치와 예방이라는 목적도 시민 大衆의 협력과 홍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원칙이라 하겠다.

⑷ 진실추구와 착오수정

예심수사가 추구하여야 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건의 초기 수사가 완료되어 이를 증거와 신문심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은 간단한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 예심인력의

판단과 사실검증에 근거하기 때문에 직권의 남용이나 사실의 오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판단이나 예심인원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만일 예심수사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른 과학적이고 공정한 판단, 객관적인 예심수사를 담보하고자하는 뜻을 지닌 원칙이라 하겠다.

3. 예심기구조직과 예심인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에는 경찰의 보안기능(政治保衛)과 방범기능(治安部門)에서 執行處, 審訊處(또는 科, 股), 警法科 등의 형태로 경찰내부에서 예심수사를 맡아왔다. 1954년 이후 헌법을 비롯하여 법제가 정비되면서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사업무의 중대성을 인식한 중국 경찰은 1954. 5. 제6차 전국경찰업무회의에서 예심업무를 독립성을 가진 단위로 분리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5년부터 공안부 豫審局, 省·自治區·直轄市 公安廳(局)의 豫審處, 地區(州·盟)·省轄市 公安處(局)의 豫審處(科), 縣 또는 縣級市 公安局(分局)의 豫審科(股)의 4단계로 전국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단계에 따른 업무도 분장되어 있는데 公安部와 廳단위 이상은 국가 전체 또는 省단위 내의 예심업무의 총괄과 관리 감독, 省급 또는 전국적, 두 개의 省이상에 걸친 중요사건의 예심수사의 집행을 담당하고 이하 公安局 단위에서는 실제 형사사건의 관할에 따라 예심을 집행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심수사기능에 종사하는 예심인원은 예심업무에 맞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에서 차지하는 예심의 비중이 중대한 만큼 예심인원의 자질과 지적 수준, 학력과 연구 수준은 경찰내부의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예심수사를 담당할 만큼의 법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양성하는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예심부문을 중시하여 역사와 전통, 교수진의 수준에 따라 예심전공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심전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省이나 市에서는 해당지역의 가장 우수한 대학의 법학과 출신 중 우수한 인력을 경찰수사의 예심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형사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심수사과정에서 有罪인지 無罪인지가 결정되므로 경찰의 예심수사인원이 일선 지방법원(中級人民法院)의 판사의 법률지식 수준보다 훨씬 우수한 편이다. 또한 예심인원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수사권한과 지위를 직접 수행하고 수사종결의견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

수한 자질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예심인원들은 예심수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율과 도덕성면에 있어서도 엄격한 통제와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또한 고문과 가혹행위의 금지, 사적인 개입과 직권남용과 수뢰금지, 비밀엄수 등의 특별한 윤리규정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4. 예심수사절차

예심수사의 開始는 사건의 受理에서부터 시작된다. 크게 예심수사절차를 단계별로 나뉘어 보면 사건의 受理, 구속의 집행과 수색 등 강제조치 집행, 체포된 범인의 심사,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심사·신문, 검증과 감정·검사 및 증거의 사실대조, 예심의 종결(법률 문서의 작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건의 수리

예심수사의 개시가 되는 절차이다. 경찰의 예심단계에서 예심수사 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예심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찰기관의 수사절차에 있어서 예심수사는 형사수사 과정 중에서 구속과 체포의 비준(허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형사수사 절차에 있어 혐의점이 인정되어 구속을 허가해 줄 것을 검찰에 청구하는 절차 또는 체포를 한 경우 경찰기관의 예심수사부문에 대하여 형사수사 기능에서 체포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예심수사의 사건이 접수되고 이 단계가 예심수사절차에 있어서 사건의 수리단계가 되며 또한 예심수사활동의 준비라고 볼 수도 있다. 사건의 수리는 형사사건의 예심수사책임을 확정짓는 단계이자 담당예심인원과 예심지휘인원, 기록원을 확정하여 책임을 부과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당해 경찰기관을 대표하여 예심수사라는 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첫 단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예심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예심부문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경우로써 형사수사를 거쳐서 수리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파출소 등 경범을 관리하는 부문(치안관리기능 : 우리나라의 방범기능)에서 경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대상 행위가 사안이 엄중하여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고소·고발사건[31], 예심수사 중인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사실과 혐의자가 발견된 경우, 현행범과 준현행범

0) 사업단위나 기관·당의 기율위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기관 내부의 지휘계통에서 접수후 결정하여 예심수사에 수리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는 탈옥범 등과 같이 즉시 강제집행이나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심수사에 있어 사건의 수리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예심수사는 수리와 동시에 전문적인 예심인원을 지정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심수사 중간에 교체할 수 없으며, 특히 주심원은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는 예심수사 인원은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한다. 셋째는 형사수사와의 상호 협조의 원칙으로 형사수사과정을 재검증하면서 형사수사기능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넷째는 엄격한 법률감독을 받아야 한다. 즉,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수사의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법에의한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하고, 다섯째는 회피의 원칙이다. 예심수사인원에 대하여는 회피[32]가 적용된다.

⑵ 구속의 집행과 수색 등 강제조치 집행

예심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제조치의 집행이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강제조치[33]는 구인, 거주감시, 보석, 구속, 체포 등이 있다. 예심수사과정에서 강제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경찰이 범인의 증거인멸과 훼손, 위조를 방지하고 진술의 조작을 방지하며 도주나 자살, 재범을 차단하거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하고자 사람의 신체자유에 대하여 강제력을 취한다. 특히, 예심수사에서 취하는 강제조치는 구인, 보석, 거주감시, 체포와 구속이 있다. 강제조치의 집행은 예심수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공정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신중하게 취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⑶ 체포된 범인의 심사

예심수사는 대부분 강제조치가 취해진 피의자에 대하여 진행된다. 그중 사건의 전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체

---

0) 중국 형사소송법의 제28조에서 제31조는 형사소송중의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피의 대상으로 법관은 물론 검찰인원(검사), 수사인원(형사, 예심인원)도 포함시키고 있다. 중국의 회피규정은 제척과 회피, 기피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대상자가 통틀어서 회피로 규정하고 내용은 제척과 회피, 기피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사에 대한 회피 적용은 형사수사에서는 물론 예심수사과정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0) 중국의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의 특징은 '보석'을 강제조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석의 내용과 집행은 우리와 거의 같고, 강제조치중에서 거주감시제도를 갖고 있고, 경찰과 검찰도 구인(소환보다 집행의 강제력이 강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드시 구별해야 하면서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체포와 구류의 개념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체포'는 구속을 의미한다. 구류는 행정구류와 형사구류로 나누는데 행정구류는 행정벌로서의 구류를 의미하고 형사구류는 '체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체포란 용어가 있는 경우는 구속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류라는 용어를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라고 해석해야 한다(筆者註, 필자 석사학위 논문 '韓·中양국 형사수사제도의 비교' 중 강제조치의 비교부분 참조).

포(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와 신문을 통해서 사건의 진위를 규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체포된 범인의 심사과정이라고 한다. 일종의 중복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심수사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내용은 형사수사절차 때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형사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진위를 반복하여 검증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추려내기 위한 중복 심리조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예심인원에 대하여는 교육은 물론 평소 조사심리 방법과 피의자 심리학 등을 집중 연구하고 조사심리기술을 부단하게 연마하고 있다고 한다.

⑷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심사・신문

예심수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분야가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취해지는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하겠다.

⑸ 검증과 감정・검사 및 증거의 사실대조

수사과정에서 취해지는 대물적인 강제조치인 압수, 수색과 검증, 부검, 검사 등의 방법도 예심수사단계에서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증거은닉 가능성이 있는 자나 장소 등에 대한 수색은 수사기관의 합리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집행을 보면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은 압수나 수색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형소법의 규정에는 이러한 범죄혐의자의 有・無罪를 증명할 증거와 자료는 소지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에 대한 협조를 강요하고 있고 압수와 수색, 검증과 검사등의 對物的 강제조치는 수사기관의 합리적이과 공정한 판단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취할 수 있다. 물론, 수색이나 압수 대상자에데 수사증을 제시하고 참여인을 두는 등의 필수적인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고 婦女의 신체에 대한 검사는 여자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와 은행계좌등의 동결과 수색도 과정과 대상, 절차는 예심수사과정중 합리적이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⑹ 예심의 종결(수사의 종결)

예심수사가 마무리되면 예심을 종결하게 된다. 예심의 종결은 곧 수사의 종결을 뜻한다. 국가가 수사권을 부여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최후의 절차로서 사건의 전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

보하고 이를 대조 및 검증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有罪 또는 無罪를 인정할 수 있고 계속적인 수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수사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결론은 크게 법에 의해 피의자를 起訴·不起訴할 것인지, 起訴를 면제할 것인지 또는 사건취소[34]를 할 것인지의 의견으로 제시하게 된다. 형사소추를 받아 기소와 심판의 단계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건과 무고한 피의자 또는 사건이 경미하여 사건취소해야 할 피의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심은 물론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법은 예심수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범죄혐의자를 구속(구금)후 수사를 2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예심수사기한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한내 종결이 불가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급 검찰기관의 허가를 경유하여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35]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특별하게 중하고 복잡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허가로 기한을 연장[36]할 수도 있다. 또한 省·自治區·直轄市단위의 고급검찰원(고등검찰청)의 허가나 결정으로 법에 규정된 중요한 사건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후에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에는 재차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기소 중에 검찰의 보충수사에 관한 의견이나 결정으로 보충수사를 하는 경우 1개월간의 보충수사를 경찰의 예심수사단계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예심수사를 마무리한 뒤 예심종결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송된 경우 검찰에서는 사건을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수사를 요구하는 등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에 대하여 그 이후 절차들을 살펴보면,

우선 '보충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검찰이 기소후에도 기소가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검찰에 대하여서도 내릴 수 있

0) 사건취소는 案件撤銷(안건철소), 즉 사건을 철회하여 없애거나 소멸시킨다는 뜻으로 형사소송법 제15조의 사건철회, 불기소처분, 심리중지, 무죄선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건이 현저히 경미하고 위해가 적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와 시효를 넘긴 경우, 형이 사면에 의해 면제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및 기타 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제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우리 형소법의 공소기각과 면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심이 최종 재판에까지 기초가 되는 심리과정이므로 이를 경찰의 예심수사단계에서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0) 중국 형사소송법 제124조 수사종결 편의 시한에 관한 규정임.

0) 중국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규정으로 여기서의 최고인민검찰원이란 우리나라의 대검찰청과 같은 격이지만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같이 검찰도 행정부인 국무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상급기관이자 중국의 형식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전인대는 상설기구인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최고의 권한을 행사한다.

는 결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충수사 결정은 예심에 대한 검찰의 법률감독권이라는 고유의 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재심요구'라는 절차[37]가 있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대하여 구속허가를 청구하거나 불기소·기소면제 의견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검찰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서 검찰의 불허가에 착오와 오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原검찰기관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여 의견의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이후 '중복심사제청'이라는 절차[38]도 있는데 이는 재심요구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경찰의 기소·불기소·체포비준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원래의 의견을 고수하고 그 이유가 불명할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하여 原검찰의 상급 검찰기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5. 예심과 간수업무의 조화

간수업무는 중국경찰이 수사와 관련해 가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물론 여기서의 看守업무는 미결수에 대하여 간수장소(유치장 등)에서의 도주방지, 자살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看守所(未決囚가 看守되는 장소 : 유치장 등의 총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강제조치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예심수사기능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간수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은 곧 예심수사기능의 원만한 진행을 보장해주고, 간수관리업무를 통해서 예심수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는 곧 예심수사절차의 환경적인 조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이 된다고 하겠다. 중국의 豫審學에서는 이러한 간수업무의 중요성을 강제조치가 취해진 구금 피의자의 생활과 정서 및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화가 예심수사에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심인원에 대하여 피구금된 상황을 전파하고 협조를 통해 피구금 피의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보호는 물론 정확한 법집행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인멸 또는 훼손된 증거의 발견과 공범의 검거, 여죄의 발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간수업무와 예심수사간의 협력과 조화는 예심수사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생활태도와 피구금 상태에 대한

0) 중국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要求復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재심 요구는 당해 경찰기관과 동급 검찰기관에 대하여 행사된다.

0) 37)과 같은 條에 규정된 내용으로 '提請復核'이란 전문용어를 사용함. 이 절차는 반드시 '要求復議'절차를 거친 후에 행사할 수 있다.

보고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피의자 신문에도 많은 영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범죄사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6. 예심수사의 특징과 요점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적 제도인 예심수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시행을 해왔고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예심판사제도로 현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단지 그 예심수사의 절차를 중국에서는 경찰의 형사수사절차를 검증하고 보강하며 객관화시키는 과정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얻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켰다.

중국경찰의 예심수사의 특징은,

우선 예심인력의 우수한 자질과 법적 지식수준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이다. 법원과 검찰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찰을 활성화시키고 경찰수사를 역동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더욱 고정화되고 발전된 제도로 예심수사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권력의 집중과 조화의 원리 속에서 검찰과 경찰은 합리적으로 분할하여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견제와 협조의 논리로 상호관계를 정립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상호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규정하고, 검찰은 법원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의 집행권한, 공무원 등의 부패사건 수사권과 강제조치 허가권을 가지며 법률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부와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세 번째는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와 증거보강수사, 강제조치 청구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의 내부기관간에도 수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견제와 협조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이러한 모든 예심수사절차와 그 집행과정을 법규를 통해 명시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체제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사인원에 대하여도 회피제도가 적용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심판단계에 앞서 경찰수사의 합법성과 과학성을 앞서 검증하고 냉정하게 비판함으로써 국민과 법에 의해 경찰의 수사과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예심수사절차를 통해 강제조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집행함으로써 스스로 수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자세와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과 자질도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선행에서부터 충분히 양성되고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심수사의 受理에서부터 책임있는 사건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심을 담당하는 2인 이상의 예심인원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 수사종결까지 이어지는 책임있는 예심수사과정을 통해 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는 물론 공정성과 합리성을 얻기에도 충분한 제도라 하겠다.

Ⅴ. 우리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과 결론

1. 우리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

법과 제도의 관계는 각 나라의 법제사와 정치사상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제도가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미 갖추어진 제도와 제도의 변화에 맞추어서 법률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에 관한 부분은 아마도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건국과 동시에 새로운 건국이념을 수용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형사소송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구법인 일제시대의 朝鮮刑事令(1912년)과 군정시대의 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의 기초 하에 1954년에 제정된 것이었다. 형사소송의 재편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기본 취지가 앞서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정서와 무관한 英美의 당사자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제는 많은 수정과 국민적 정서의 서구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민족적 정서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도 많지 아니하다. 특히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집중현상은 주위의 견제와 감독기능마저도 상실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행정부에 예속된 종속성에서부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 역시 지나치게 편중되고 수사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이중 수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본연의 업무인 공소권행사에마저 그만큼 집중력이 결여되고 공정하고 정확한 행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찰의 수사권제도는 이러한 우리의 수사현실에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와 감독을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형사사

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검찰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서부터 볼 수 없어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판단의견을 우선 제시하여 검찰에 대하여 협조와 함께 결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절충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법규에 명시하고 사건의 관할마저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분할하여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도록 하 참 고 문 헌 니다. 견제와 협조의 원리 속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수사제도를 정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물론 중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운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부단한 교육과 시행착오, 역사적인 많은 시련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사실은 경찰조직은 물론 국가의 중요정책결정권자들이 수사와 형사소송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이러한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는 점이다. 권력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면서도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권력이 편중되어 중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스스로 붕괴하는 '문화대혁명'의 암울한 시기도 거치면서 권력의 합리적인 분배와 균형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임을 예심수사절차를 비롯한 중국경찰의 수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2. 결 론

형사사건의 수사는 국가의 기능별로 서로의 지위와 이익을 위한 흥정과 권력쟁취의 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임을 받아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하게 실체적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사법작용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사권의 귀속이 검·경의 큰 거래와 투쟁의 대상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다. 수사의 정의를 공소를 제기·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범죄유무를 밝히고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형식성과 목적을 상실한 표면성에 반성의 질문을 던진다. 왜 '공소를 제기·유지하기 위해'라는 검찰의 공소권이 전제가 된 수사의 정의가 통설화되었을까? 수사의 목적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다는 수사기관의 주체성과 목적성은 어디로 가고 검찰의 공소권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전락한 것일까? 수사기능을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소권의 행사와 유지를 위한 준비기능으로 정의하는 형사소송이론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현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에 적합한가를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 경찰의 수사가 형사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가의 형벌권을 정확히 행사하기 위한 형사소송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이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견제와 협조를 통해 바람직한 형사소송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1. 국내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1999.

김찬원, 공안행정과 법률의 한·중비교연구(공무원국외훈련과제연구보고서 : 관리번호 96-8), 1999.

김찬원, 중국경찰제도와 수사권에 관한 연구, 경찰종합학교 교과논문집 제16집, 2001. 1.

孫 燕, 중국경찰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외국문헌

嚴勵 李昭 王智民 主編, 中國公安業務全書, 北京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6.

公安教材編審委員會 <豫審學>編寫組, 豫審學 上·下, 北京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4.

公安公安教材編審委員會 <豫審業務教程>編寫組, 豫審業務教程, 北京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4.

<豫審學概要>編寫組, 豫審學概要, 北京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3.

公安教材編審委員會 <刑事案件偵察>編寫組, 刑事案件偵察 上·下, 北京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5. 7.

法學教材編輯部編審 周應德 主編, 犯罪偵查學, 北京 : 法律出版社 1993. 6.

陳光中 主編, 刑事訴訟法學, 北京 :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9.

惠生武, 警察法論綱, 北京 :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1.

金燦源, 中韓兩國刑事偵查制度之比較, 中國 山東大學 法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